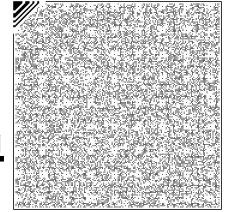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서 논의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관련입니다.
2.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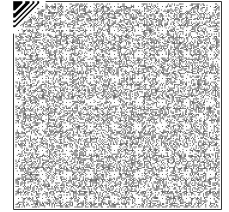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2. 다만,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가급적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경기도지사(공공의료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행정사무관 **한나영** 생활방역팀장 **심은혜** 전결 2021. 7. 20.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689** (2021. 7. 2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8 팩스번호 044-202-0000 / iyoung79@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